

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지원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(확대질환 사업준비단 전문 인력)

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「국민건강보험공단」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0. 3. 11.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< 블라인드 채용 및 유의사항 안내 >

- ◆ 우리 공단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,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◆ 지원서(자기소개서 포함)에는 사진 등록란이 없으며 작성 시 학교명, 출신지역, 가족관계, 성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... 접수마감일('20. 3. 20.) 기준

분야	인원	자격요건 및 우대사항
계	9명	-
일차의료 확대질환 사업준비단 전문 인력	박사 3명	▪ 보건학, 통계학, 의학, 약학, 간호학 박사 학위 소지자 (‘20.3월 학위 취득예정자 포함)
	석사 6명	▪ 보건학, 통계학, 의학, 약학, 간호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(‘20.3월 학위 취득예정자 포함)
※ 우대사항 - 경력 : 우리 공단 및 건강보험, 보건복지, 의료분야 관련 근무경력자, 연구 및 일반 행정업무 근무경력자 - 자격증 : 전문의 자격증, 의사 면허증, SAS 자격증(base, advanced 이상), 정보처리기사·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·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, 데이터분석전문가(ADP)		

< 참고사항 >

-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('20. 3. 20.) 기준입니다.
- 급수만 다른 동일 자격증은 상위 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됩니다.
- 경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력만 인정하며,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높은 점수만 적용합니다.
- 반드시 입사지원서 제출 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지원 자격 및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추후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다르거나 증빙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최종합격자에서 제외됩니다.

공통 자격요건

- 만 65세 이하인 사람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
- 계약기간 시작 시점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
- 우리 공단 「인사규정」 제8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... (붙임 1) 참조

공통 우대사항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※ 단, 관계법령에 따라 분야별 모집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 적용
-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
※ 응시자 본인이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

2 근무조건 및 담당업무

근무조건 ... 근무 장소는 우리 공단의 부서 및 사업준비단을 말함

분야		계약기간	월보수 (천원)	근무지
일차의료 확대질환 사업준비단 전문 인력	박사	2020. 4. 3. ~ 12. 31. (약 9개월)	4,600	사업준비단 (서울 소재)
	석사	2020. 4. 3. ~ 12. 31. (약 9개월)	3,100	

- 고용형태 : 기간제 근로자 ...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없이 고용관계 소멸
- 근무시간 : 09시 ~ 18시(1일 8시간, 주 5일 근무)
 - ※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유급휴가 부여
- 후생복지 : 4대 사회보험 가입 등

담당업무

분야	담당업무	업무관련 문의
일차의료 확대질환 사업준비단 전문 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확대질환 사업 준비단 업무 지원 ▪ 아동 천식·아토피, 성인 천식·COPD 질환모형 개발 ▪ 일차의료 만성질환 통합모델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과제 관리 ▪ 확대질환 교육서비스 콘텐츠 개발 ▪ 지역의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채널 구축 ▪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관련 정책 업무 지원 	033-736-4525~6

3 **지원서 접수 및 일정**

접수기간 : '20. 3. 11.(수) ~ 3. 20.(금) 18:00까지

접수방법 : 이메일(e-mail : 00b1080@nhis.or.kr) 접수

※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하며, 접수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함

※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담당자(033-736-4526~7)와 메일도착여부를 유선확인

※ 응시원서는 게시자료를 다운 받아 작성

전형절차 및 일정 ... 각 전형 일정은 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연번	구 분	일 시	비 고
1	지원서 접수	3. 11.(수) ~ 3. 20.(금) 18:00까지	이메일(00b1080@nhis.or.kr) 로 접수
2	서류합격자 발표	3. 24.(화)	공단 홈페이지 및 개인 e-mail을 통해 발표
3	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	3. 24.(화) ~	이메일(00b1080@nhis.or.kr) 로 접수
4	면접시험	3. 30.(월) ~ 3. 31.(화) 중 실시	일정·장소 추후 공지 ※ 예정 장소 : 서울 소재 공단 지사
5	최종합격자 발표	4. 1.(수)	공단 홈페이지 및 개인 e-mail을 통해 발표
6	계약 및 배치	4. 3.(금)	

- 합격자발표 등 안내사항 발생 시 '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→ 뉴스·소식 → 채용 게시판'을 통해 공지합니다.
-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우리 공단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,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결원 또는 계약포기자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운영하오니 입사지원서에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지원서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각종 증빙서류 미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**이며, 입사지원서 제출 전 반드시 증빙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지원 자격 및 우대항목에 해당하는 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- 서류합격자는 **아래 증빙서류를 면접 전일까지 제출**하여야 하며, 서류 내용이 지원서에 기입한 사항과 다른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.

< 서류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관련 안내 >

연번	증빙서류 명	비 고
1	주민등록등본	■ 응시자 전원 제출(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)
2	주민등록초본	■ 남성만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및 제출
3	면허 / 자격증 사본	■ 지원서에 기재한 면허 / 자격증 전체 제출
4	졸업증명서 사본	■ 기재한 학사, 석사, 박사학위 졸업증명서 제출
5	경력증명서	■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제출 ■ 우리공단 경력증명서는 퇴직 직전 소속 지사에서 발급 후 제출
6	논문 표지 사본	■ 본인 및 기재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논문 표지 사본 제출(해당자만 제출)
7	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	■ 해당자만 제출
8	장애인 증명서 또는 등록증 사본	■ 해당자만 제출 (등록증은 앞/뒷면 모두 제출)
9	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■ 해당자만 제출

- 향후 본인 또는 타인의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, 채용의 취소 및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며,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합격한 사람은 향후 5년간 공단이 실시하는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.
- 근무시작일 전에 전 직장의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, 재직 중에는 영리 목적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.
- 합격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
- 합격 통보된 자가 근무시작일부터 무단결근한 경우 합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, 최종합격 포기 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그 밖에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지원실 일차 의료지원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(☎ 033-736-4525 ~ 4527)

[붙임1]

<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>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정부·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부정 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공직자(「부패방지법」 제2조제3호)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그 퇴직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공직자였던 사람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 고를 받은 경우: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